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이 창섭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과 관련하여
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현행 경사도 기준의 단서조항
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.

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과 관련하여 지난 3월 기존의
기준인 최대경사도 21° 를 평균경사도 18° 미만으로
하되, 18° 미만의 필지인 경우, 한 필지내에 격자
($10 \times 10m$)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
사도 중 최대값을 적용하여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
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·공포한 바 있습니다
만, 기준 제정이나 기준 변경 전에 합법적으로 건축한
기존 건축물의 경우, 철거 후 신축, 재축, 증축 등이 불

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이를 바로 잡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 보호, 행정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